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055

발의연월일: 2022. 11. 2.

발 의 자: 안철수 · 서범수 · 조수진

백종헌 • 박덕흠 • 안병길

홍석준 • 이채익 • 최연숙

서병수 · 태영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단체·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행사 주 체가 명확한 지역축제와 달리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'자발적으로 연 행 사'의 경우 경찰이나 지방지치단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.

이에 앞으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'흑고니(Black Swan)' 유형의 재난 대비를 위해 주체·장소 등과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, 행사 등 '다중운집행사'와 관련해서도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·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자 함(안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제1항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1항 본문 중 "치료"를 "치료(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한다.

제66조의11제1항 중 "지역축제를"을 "지역축제(다중운집행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치료 및 보상) ① 재난 발	제65조(치료 및 보상) ①
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	
책·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	
자,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	
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	
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	
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	
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	
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	
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	
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	
<u>치료</u> 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	치료(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
급하며, 사망(부상으로 인하여	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. 이
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	<u>하 이 조에서 같다)</u>
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	
지급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	
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	
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	
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	
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	
아니한다.	

②・③(생 략) 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를 가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
전관리조치) ①
<u>지역축</u>
제(다중운집행사를 포함한다. 이
하 이 조에서 같다)를
② ~ ⑤ (현행과 같음)